



# 혼인빙자간음과 간통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http://www.womenlaw.co.kr)

**갑** 순이는 갑돌이가 총각인 줄 알고 1년 정도 사귀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야간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고 형편장까지 돌리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갑순이는 갑돌이와 육체적인 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새벽에 갑돌이가 갑순이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갑돌이 부인과 친동생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추침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갑돌이와 갑순이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갑순이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도 너무나 억울한 데 간통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간** 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간음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서의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갑순이에게 이 죄를 묻기 위해서는 갑돌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갑순이가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성관계를 갖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순이는 갑돌이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므로, 갑돌이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갑순이는 갑돌이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약속까지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갑돌이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이러한 갑돌이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기한은 갑순이가 갑돌이가 유부남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더불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에서 만약 갑돌이 부인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모두 간통죄로 고소(이혼청구 소송을 전제로 함)하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다면 갑돌이의 행위는 이 둘 모두에 동시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위 갑순이의 사안과 달리 구체적인 실제 사안에서는 그 범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부남이나 약혼을 한 남자가 본처나 약혼녀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그 성립은 쉽겠으나, 미혼남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결혼할 뜻이 있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나 애정이 식었다는 등 사정변경에 의해 부득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면 그 범의를 입증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혼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 또한 없으므로 오로지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혼인 전의 육체적 관계는 상대방의 결혼 약속을 믿어 어쩔 수 없이 응한다고 하기 보다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기한 철저한 자기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PPFK